

제234회 영등포구의회  
2021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 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이규선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1. 12. 17.

運 營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 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443호로 2021년 12월 16일 이규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 개정에 따른 결산 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여 세입·세출 결산 등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결산 검사를 추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“3명”에서 “6명”으로 변경(안 제2조)
- 나. 그 밖에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, 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2022년 예산 반영
- 다. 입법예고: 생략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른 결산  
 감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,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상위 법  
 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

### ○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에서 결산감사위원의 정수를 “3명”에서 “6명”으로 확대하였음.

이는 지방재정 규모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감사  
 위원 선임가능 구간을 확대한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 
 “영”이라 한다)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영 제83조제1항에서  
 자치구의 경우 현행 “3명 이상 5명 이하”에서 “3명 이상 10명  
 이하”로 개정하고,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 
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음.

- 안 제4조의2에서는 대표위원의 선임을 의장이 의원인 감사  
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개정하였음. 이는 현행 3명 중 의원이  
 1명에서, 개정 후 6명으로 확대되면 의원이 2명까지 늘어나는  
 것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보임.

현 행 영	개 정 영
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 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<u>시·군 및 자치구의</u>	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 는 시·도 의 경우에는 7명 이상 20명 이하, <u>시·군 및 자치구의</u>

<p>경우에는 <u>3명 이상 5명 이하</u>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<u>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</p>	<p>경우에는 <u>3명 이상 10명 이하</u>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<u>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③ 현행과 같음</p>
---	---

- 그 밖에 안 제4조와 제9조는 개정 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음.

현 행 법	개 정 법
<p><b>제64조(의결정족수)</b>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.</p>	<p><b>제73조(의결정족수)</b> ①·② 현행과 같음</p>

○ 검토결과,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구 세입·세출 결산 등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의회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.